

일 욕심도 많다!



파워엔진의 힘으로 많은 양도 빠르고 깨끗하게 뽑는다!

멀티 네트워킹

최고 50명이 동시에 사용하여도 에러나
짐없이 힘차게 프린트합니다.

분당 16장 출력

프린트 양이 많아도 16PPM의 출력 속도와
1200dpi급의 해상도를 유지합니다.

저렴한 유지비

대용량 토너와 일체형 카트리지로 사용, 장당
출력비가 28원인 경제 프린터입니다.

양면 인쇄장치 기본

일반 프린터와는 달리 60만원 이상하는 양면
인쇄장치가 본체에 기본 내장돼 있습니다.

***라제트(LAZETT)란?**

레이저프린터의 "LASER"와 빠르다는 의미인 "JET"의 합성어로, 파워엔진을
징착하여 더욱 빠르고 강해진 삼성 레이저프린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힘 좋고, 일 잘하는 레이저 프린터

파워엔진 삼성 라제트



SAG. C. 10

시민과 변호사

긴급진단

이혼소송 계류증 관통죄 처벌

역사 속의 재판 천륜과 인륜

시민의 소리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스토킹

나의 잊지 못할 변론 어느 위자료 청구소송 이야기

특별기고 체험적 검찰의 정치적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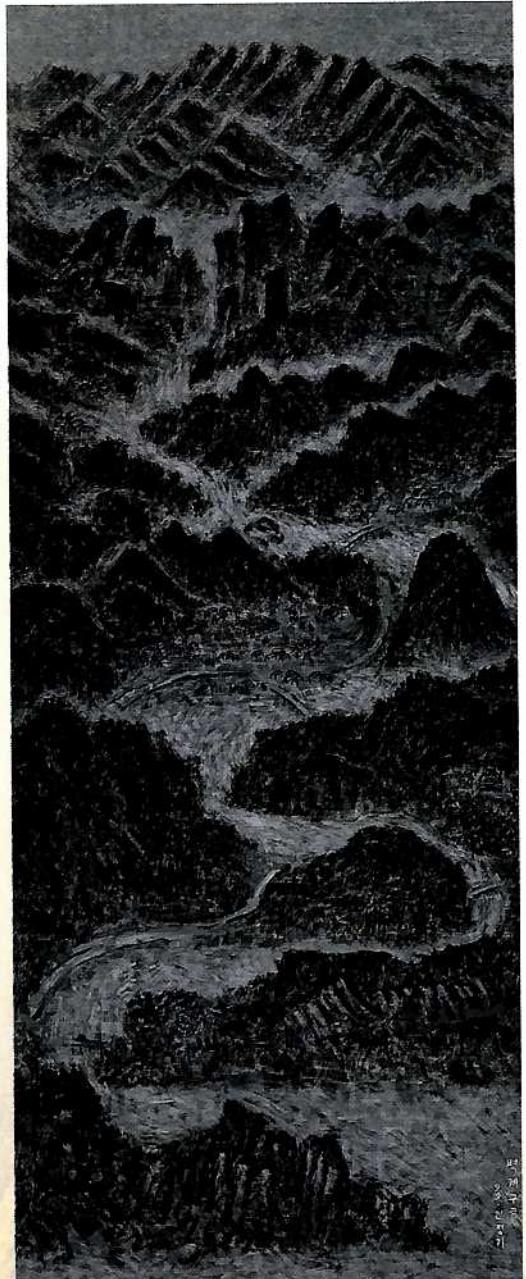
인권법안을 본다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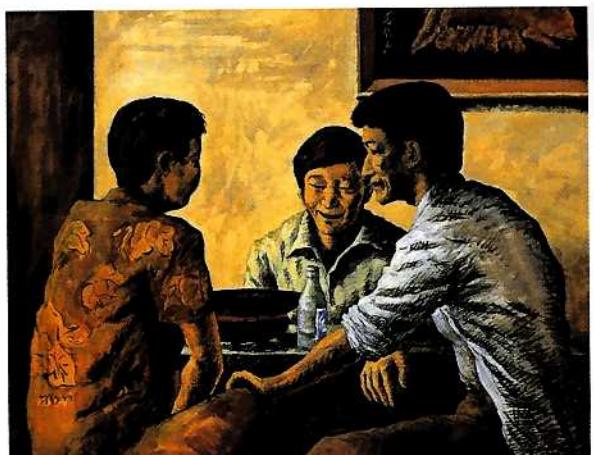




이 달의 전시회 관련기사 134쪽



벽계구곡도 1 캔버스 위에 유채 80×199cm 1999



대화 유채 145×112cm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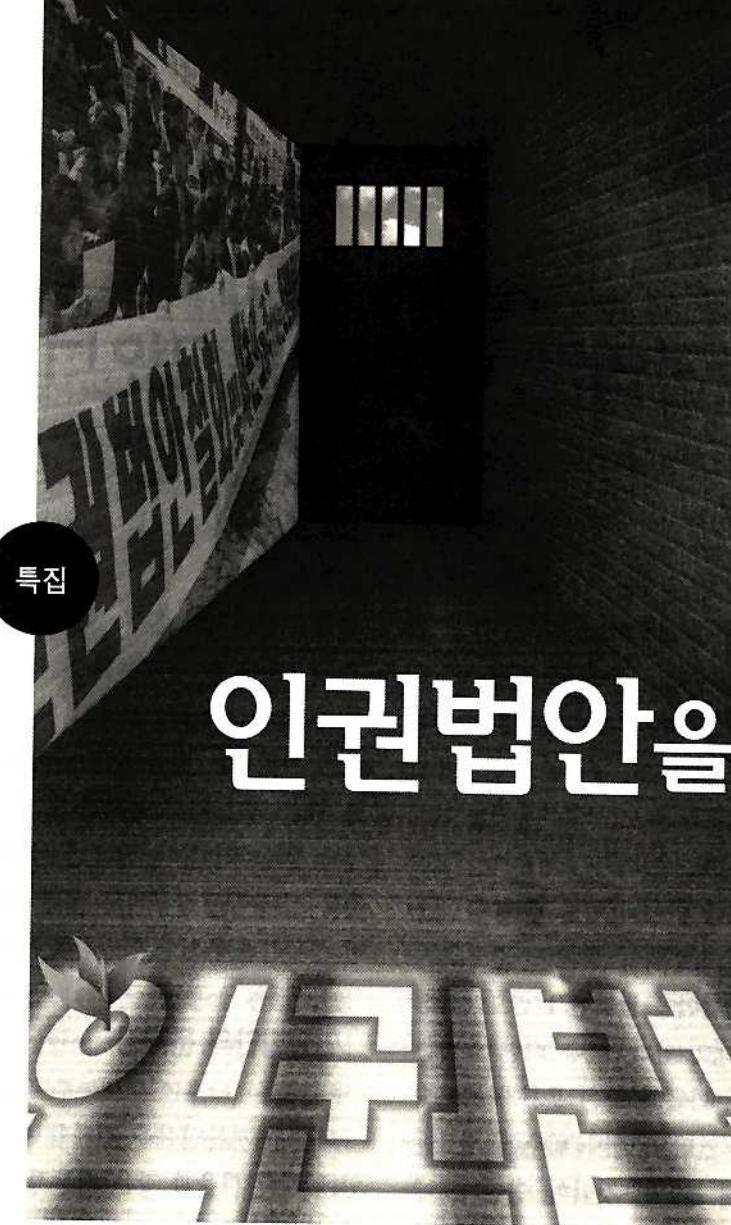
민정기展

4월 23일 ~ 5월 7일

아트스페이스 서울, 학고재

특집

인권법안을 본다



인권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양 건 안양대학교 법대학장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 과연 옳은가?

권 성 동 법무부 인권과 검사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차 지 훈 변호사

인권위원회의 조직모형과 권한에 대한 소고

최 창 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약박사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

배 경 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인권법안, 어떻게 볼 것인가

양 건 한양대학교 법대학장

인권기구의 필요성

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이 기구를 국가기구로 하느냐 아니면 법인 형태의 민간 기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 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구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권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인권기구 설치는 왜 필요한 것이며, 인권기구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인권기구의 필요성 또는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인권정책의 자문 및 인권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이다. 이 가운데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의 인권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 주로 사적 관계에서의 각종 차별행위가 주된 인권침해 유형으로 문제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사

적인 차별행위가 중요한 인권침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인권침해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 1987년 시민항쟁 이래의 민주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권력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법안의 문제점

이같은 기본인식을 전제할 때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다. 우리의 인권상황에 비추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이야말로 인권기구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법안의 규정은 매우 미비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진정 사건의 조사를 위해 관계 국가기관에 대해 자료, 물건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정도의 제재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조

사불응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수사진행중인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권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가장 핵심적인 조사대상을 배제하는 것이며,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사거부를 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문제이다. 이 규정이 남용된다면 조사권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나아가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제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에 비추어 그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권한에 관해 인권단체들이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기구에 시정명령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사인(私人)에 대한 시정명령과 달리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권기구를 행정 각부보다 상위에 둔다는 것인데,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인권기구의 법적 형태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연 적절한 법적 형태인지 의문이다. 법안에 의하면, 인권기구로 설정된 '국민인권위원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의문인 것은, 법안에서 규정한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권한 내용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특정한 범위의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주도되고, 광범하게 일반시민이나 관련단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이고 또 그래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이러한 양상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을 보면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적 형태에서는 사법인에 가깝게 되어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라면 법률의 규정만으로 설립될 수 있을 터인데 사법인처럼 굳이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원회를 명실상부 공법인의 형태로 설정한다면 이것은 공법인으로서의 국가기구라고 할 것인데, 공법인으로서의 국가기구가 적합한지 아니면 독립규제위원회 형식의 국가기구가 바람직한지는 더 검토할 문제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구성방식은 타당성이 없다.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이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고, 그 영향 때문인지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도 그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아니며 이 점에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 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은 인권법 제정에 앞서 그 동안의 대립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권한이나 기능에 비추어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에 참여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참고로 최근의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법원장을 배제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인권법안은 그 세부내용은 차치하고 기본적 골격에서부터 중대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권기구 설치의 논의 확산 필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 양상에 대해서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특정한 범위의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주도되고, 광범하게 일반시민이나 관련단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이고 또 그래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이러한 양상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이 서로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을 보여온 것도 되새겨 볼 일이다. 인권단체들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법무부의 위상을 전혀 인정치 않으려 하고, 반면 법무부는 이른바 '민간공추위'(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측의 대안을 전면 배격하는 입장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법무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불신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난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도 법무부의 인권보호담당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전면으로 부인하려는 자세가 타당한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편 법무부로서도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고집한다면, 과연 새로운 인권기구가 순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그 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볼 일이다.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 과연 옳은가?

권 성동 법무부 인권과 검사

머리말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살피기로 한다.

50년 현정사상 최초로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하고 민주사회 핵심인 인권의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법 제정을 통한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이하 「UN권고안」으로 약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인권현실을 반영한 인권법 시안을 마련한 다음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1999. 3. 30.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무리한 주장을 펴며 '인권법안 철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민단체

1.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고,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완하는 기구임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다. 국가는 인권침해를 수사, 소추하기 위하여 검찰, 경찰을,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구제를 위하여 법원을, 입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즉 국가의 사법제도 전반이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보장기능에 '틈새', '허점(shortcomings)'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를 설립하여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UN권고안도 "인권위는 국가기관을 대체(replace)할 수 없고 국가기관과 경합(compete)해서도 아니되며, 오직 국가기관을 보충(complement)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젖혀놓고 모든 인권문제를 전담해야 하고,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며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의 성격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정부의 인권법안은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

법무부는 인권법에 관한 정부안이 확정될 때 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국민적 토론을 거쳐 인권법안을 성안하였다. 즉, 일부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위한 시민단체공동추진위원회(약칭 공추위)'와 토론회 20회, 공청회 4회, 당정회의(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공추위의 의견을 대변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공추위와의 협의과정이었음) 6회, 수십 회의 신문, 방송 등 보도매체의 보도와 비평이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UN 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좌관 Brian Burdekin과의 간담회,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NGOs와의 자문 등 국제적 의견까지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초의 법무부안을 3차례 수정한 끝에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사상 이 정도의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안된 법은 인권법 하나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공추위'는 자신의 의견이 100% 수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권법안을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밀실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3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가 권력형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 데 효과적임

정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설립형태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기관으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인권위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되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집권자를 포함한 권력형 인권침해를 감시·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주로 집권권력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 정권하의 '의문사 사건'을 상정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인권위를 민간 특수법인으로 하면 독립성이 강화되어 권력형 인권침해를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 어려운 유수한 인권활동가를 영입하여 인권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UN권고안도 "인권위를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인권위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UN으로부터 인권위의 운영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모두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기구이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아님

정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위의 구성, 직원들의 인사, 운영,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관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즉,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 9인의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토록 하고, 인권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인권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인권위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인권위가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의견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별개의 기구임에도 공추위는 인권위에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해서 법무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인권위가 독자적인 권리주체가 되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소송도 하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추위는 법인이라고 하면 언뜻 사람들이 주식회사나 정부의 각 부처 산하의 공법인을 연상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형태로 하면 독립성이 없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지시, 간섭, 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법안에 명시하였으므로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기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5 인권위의 조사대상은 제한하는 것이 인권위의 성격에 부합되며, 인권위는 시정권고권만으로도 충분히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정부의 인권법안에 의하면,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①수사기관 등 직원의 인권침해행위, ②수사기관 등이 아닌 정부기관 직원의 인권침해행위 ③차별행위 전반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추위는 인권위가 '모든 인권침해행

법무부는 인권법에 관한 정부안이 확정될 때 까지

장장 10개월 동안 국민적 토론을 거쳐

인권법안을 성안하였다.

'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권위의 감시·보충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주장이다. 인권위가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다면,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경찰,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며 방대한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하여 인권위가 기존 국가기관을 대체하거나 국가기관과 경합하는 것이 되므로 UN 권고안과 인권위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

원래, 인권위는 높은 도덕적 권위와 국민여론의 압력으로 그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인권위는 예외없이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만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권' 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정부의 인권법안도 인권위에 시정권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공추위의 주장과 같이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면, 인권위는 사실상 '법원'의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차별행위는 그 성질상 모든 국가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갖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인권위가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를 하는 것이 되어 헌법원리 및 국가조직원리에 반하게 된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권위

의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여론의 표적이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는 사실상 강제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권위가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명령권을 보유하게 되면, 인권위는 수사 기능과 재판기능을 함께 갖는 초현법적인 권력 기구가 된다. 그 경우 인권위의 권력남용을 감시·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권위'가 필요할 것이다.

맺으며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한 이래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권위를 설립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모범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부 시민단체도 인권위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차지훈 변호사

머리말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인권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권법의 제정을 누구보다도 반겨야 할 인권단체에서는 단식농성까지 벌이면서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안을 비판하는 성명 또한 쇄도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이 인권법이 뒤틀린 채 과행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부안을 토대로 인권위원회가 설립·운영될 경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독립성 보장

인권위원회 논쟁 중 핵심이 되는 사항은 독립성 보장이다. 법무부는 국가기구가 되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우므로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권단체에서는 법인이 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조차 어렵게 된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된다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가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직원의 일부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채울 수밖에 없고, 예산도 정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인권위원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위원의 신분보장 및 위원회 예산확보의 독립성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관장하여도 된다는 것인가

처음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안'에 의하면 인권위원회는 전형적인 법무부 산하기구로서의 민법상의 재단법인이었다. 그 후 이에 대하여 각계의 비판이 일자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원회에 관여하는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정부안에 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설립위원을 추천하며, 설립정관을 인가하고, 위원

뜨거운 '인권위' 위상공방

법무부

흔들어야

국민인권위원회가
전략으로 지켜

의뢰용 기구로 만들기
뒤 복층의 간접·감시
· 감시 대상이어야 할
상위기관으로 자리잡겠

들은 인권기구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
자위는 커녕 통제가 용
되는 의도라는 것.
화하고 타기관과의 중
립게 만들어 인권기구
나는 주장은 평계라고

인권상황에 있는 우리
대 강력한 준법기관
로 힘을 실어주는 것
의 생각이다.



▲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일보』, 1999년 4월 22일자).

회는 모든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의무를 지며, 예산안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전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권옹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관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인권옹호 사무관장'을 내세워 인권위원회를 그 휘하에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모든 사태를 일으킨 근원이라고 확신한다. 인권위원회가 담

당하여야 할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는 정부법안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에 대한 것으로, 주로 검찰·행정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의 인권보장의무를 말하고 있는 법무부의 인권옹호 사무관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업무관장을 이유로 끝까지 인권위원회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지나친 업무 욕심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견제하

"민간특수법인 형태"

법무부 입장

시민단체들이 인권법안 개정 요구부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기능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들이 논란의 근본은 유엔의 '국내인권기구 설립'에 더라도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점을 보완하는 기구이자 기존의 국가하거나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인권위 위상=법무부는 주된 인권법령안을 정부로부터 분리돼 자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기구(특수법인)가 실질적인 인권보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권위에 별개의 범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점과 인권위의 전형으로 평드, 호주, 영국 등 인권 선진국들 형태의 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사례다.

◆법무부와 인권위의 관계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언래보고 권고와 의견의 내용을 법무부에

여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 굳이 과거 정권시절 수사·교정기관들의 추악한 인권침해 전력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여야 할 인권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조사대상의 한정

정부안은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수사기관에 의한 생명·신체의 자유에 관한 침해행위인 8가지 유형으로 국한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서도 차별사유와 적용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정부법안처럼 인권위원회의 관할범위에는 거의 모든 인권사항을 포함시키면서 그 조사 대상으로는 몇 가지 인권침해 유형 및 차별행위로 한정하여 관할범위와 조사대상을 이중화시키는 것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및 동가치성의 인정을 촉구하는 유엔의 권리에도 반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서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극히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침해행위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조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사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부법안에 따르면 감청 행위만 조사대상이 될 뿐 미행이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행위 등은 아예 조사될 수조차 없

현실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안과 같이 형사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몇 개 유형만을 한정하여 열거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게 된다. 차별행위 역시 주로 고용관계 등 사적 인 영역에 국한하고, 최초 법무부 초안에는 있었던 "기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이라는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도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심수 석방시 준법서약제 문제는 그 당부를 떠나 중요한 인권문제임에도 인권위원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행위 유형 8가지 중 인권법안 제40조 제1호 '아' 목에 규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이로써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이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다른 유형의 규정을 두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서 빌려온 위 규정을 아무리 확대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으로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 인권보장의 정도와 맞는 수준에서 역할이 부여된다. 우리와 같이 민주화의 이행기에 있는 국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와 같이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억눌리고 짓밟혀 왔던 인권이라는 화두를 전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제

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정부안과 같이 형사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몇 개 유형만을 한정하여 열거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조사거부권

정부법안 중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이 조사대상에게 조사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또는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는 기관의 장이 그와 같은 거부 사유가 있다는 확인서 한 장만 써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인권위원회는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서도 자료제출이 잘 안되는 실정인데 관련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의 조사에 대하여 정부안과 같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권을 피조사기관의 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는 이때 서면으로 조회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서면조회로 요구되는 자료나 현지조사의 목적이 달성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조회 상대방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도 없기 때문에(이 경우에는 과태료조치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조회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조사권과 다른 법의과의 균형문제는 조사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피조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한계규정을 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시정명령권

법무부는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 인권위가 다른 기관을 재판하고,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기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이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기관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초월하는 기구라는 비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위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 회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유엔 또한 인권기구가 심판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권만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시정명령과 같은 구속력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모순되는 초법적인 발상은 전혀 아닌 것이다.

정부법안에 의하면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패, 조정 실패 후에 또다시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미 수차에 걸쳐 당사자에 의하여 거부된 후 다시 당사자의 의사에 구제조치의 수용 여부를 맡긴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우리 인권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들 수 있다. 예컨대 구제조치의 대상이 국가기관이나 사인이나, 또는 구제방법이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나 또는 제도적 개선이나 등에 따라 명령, 권고, 의견 표명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이 시기 우리에게 인권위원회 설립은 어떠한

결국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권만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시정명령과 같은 구속력 있는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문제이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과거 정권에 의하여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던 인권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이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제도적 틀의 하나를 마련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 틀이 법무부의 과욕과 이기에 뒤틀리고 기형화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민주적 시민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조직모형과 권한에 대한 소고

최창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행정학박사

서론

인권위원회는 1977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짧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능상의 유용성 및 상징성으로 인하여 각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 주도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아래에서는 인권법 제정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을 간단히 정리하고 유엔 권고 및 한국적 특수환경을 감안한 인권위원회 조직모형 및 인권위원회 권한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인권법 제정에 대한 논란

1998년 9월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공표했을 당시 재야단체는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인권법이 조직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작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 법무부가 상정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법무부는 상당 부분 수용하여 주무관청을 전제로 한 법인성격을 배제하고 긴급시정권고권을 추가한 안을 제시하여 제203회 임시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하였다.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기능과 역할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유엔은 지침¹⁾과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일반원칙을 총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하고 있다.²⁾ 유엔의 권고 내용을 볼 때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인권보호 기능, 인권증진 기능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차별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기능은 정부 기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홍보, 인권연구 및 감시 기능과 국제협력 기능 등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 권고와 특수공법인 형태의 장점

유엔은 파리원칙을 통하여 인권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separate and distinct legal personality)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유엔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아닐 것(non-departmental bodies)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및 호주는 정부 부처가 아닌 공법인 형태(body corporate)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종평등위원회(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가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처 기구가 아닌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이다.

유엔은 파리원칙에 앞서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1978년 유엔지침은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뢰하는 국가내 특정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 및 권고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구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때 널리 사회 각계각층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및 대표성을 규정한 동 지침은 인권위원회의 성격이 정부 기구가 아닌 공법인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대표관료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구로 할 경우 대표성 있는 다양한 인력을 인권위원회에 영입할 수 없다.

또한 1993년 유엔총회에서 의결한 원칙을 보면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함에 있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권고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정부자문기능을 보면 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항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에 종사할 것을 의무로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권고권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는 불충분한 권한을 갖는 것만큼이나 해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권위원회는 책임에서 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을 갖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³⁾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만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발달된 구제기법이라고 본다.

우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양 당사자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1) 197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위원회세미나(인권위원회를 주제로 한 최초의 유엔회의)에서 채택되고,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에서 승인된 지침, 즉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말한다.

2) 1991년 유엔인권센터가 주관이 되어 파리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의결한 일명 파리원칙, 즉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을 말한다.

경우 조정절차에 들어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을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힌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비록 권고 권한을 갖게 되지만 민원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입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인력을 통하여 조사하고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도소 등을 시찰할 수 있고 권고 처리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지운 후 불수용 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여 사실상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게 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이 없는 권고를 행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그 결정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권고 결정만하고 법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조사 민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권을 갖게 될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뒤따르고 이럴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유엔원칙은 인권위원회의 권한 범위내에서는 상황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면담해야 하고 모든 정보나 문서도 입수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맨이 그 결정은 권고 형태를 취하지만 민원 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무한한 접근이 허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한 적정한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나 안기부장 등의 정보접근 제한 사유서가 명시적으로 제출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⁴⁾

결론

현대에 와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도 더욱 복잡해지고 관련 업무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능도 종래 덜 복잡하던 시대의 구호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결의한 인권위원회 기능 및 구조의 보편적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명 파리원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구조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또한 그 나라의 헌법 구조 및 정치·행정 환경 등에 따라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설치와 강화를 위한 핸드북』(유엔, 1995).

4) 호주인권위원회의 경우도 정보 접근 또는 제공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① 해당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특정 개인의 익명성이 노출되는 정보 및 문서. ②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자료를 제외한 내용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

배경 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실무간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이 마침내 최종 심판대에 올랐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정권 홍보의 적극적 수사(修辭)로 동원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표적 인권정책 가운데 하나인 인권법. 현재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한 인권법안은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 법사위 소위 심사에 회부되어 있다. 이제 국회심의만 통과하면 '국민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의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될 참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반민주 악법도 아닌 인권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현장을 뛰어나며 우리 사회의 불행했던 역사의 흔적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해온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불사하는 이 아버니한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인권은 국가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핵심적 기준이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가 응변하듯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때로 국가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 인권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인권침해를 방지·조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강력한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고 국가의 기본틀을 인권의 기준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는 새로운 독립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것이 국가인권기구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라 설치될 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그러나 정권홍보와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인권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

감시대상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 된다?

인권법안에 따르면 법무부가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중심적인 국가기관(제6조)이 되고 인권위원회는 단지 인권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는 기구일 뿐이다. 인권위의 성격과 위상이 법무부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권위가 작성하는 연례보고서다. 인권위는 매년 자신의 '전년도 활동상황' 만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권상황 분석과 그 개선대책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는 기초자료만 제시할 뿐, 법무부가 인권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관계 법령과 제도 등의 종합

하고, 인권위의 세부적인 뼈대를 규정할 설립정관 역시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인권위 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예산의 요구절차 및 사용 등 세부적인 규정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제·개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법무부 주도하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법무부가 인권위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인권위의 독립성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위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은 물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취한 조치결과까지 통보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이중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법무부가 인권위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권옹호'를 빌미로 다른 국가기관의 업

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의 관계 또한 '주무부처와 하위기관', 즉 상하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법무부가 감시·간섭할 수 있는 다층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인권위의 설립과정을 법무부가 전적으로 독점한다. 인권위의 설립위원 전원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

무에까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자신이 인권업무의 주무부처이니 만큼 이 정도의 개입과 간섭은 당연한 것이며, 인권위 설치를 주도하는 것도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등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되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위의 상위기관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인권업무의 주무부처임을 아무리 강변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새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치사찰이나 교도소내 의문사, 불법불심검문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가 이렇다 할 근절책이나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 과거 인권피해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여전히 지목되고 있는 법무부가 당장 인권옹호부서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한다?

- 지난해 8월 1일, 울산 태광산업(주)에서는 조합원 50여 명을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관

인권현장을 뛰어다니며 우리 사회의 불행했던 역사의 흔적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해 온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불사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리직원 수백명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두해 있던 경찰은 폭력사태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 지난해 9월 춘천교도소 재소자 장윤영 씨가 소내 불법감금 및 구타 등을 이유로 낸 청원서를 보안과장이 고의적으로 묵살했다.

- 지난해 12월 인천시경 대공분실측은 이적단체 구성협의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을 연행한 후,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거부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 지난해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부산구치소측이 약 반입을 불허했다.

- 지난해 7월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이 수용자들에 대한 불법구타·강제노역·국고지원금 유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연기군청과 보건복지부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적절한 대응책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지난 1월 11일 영하 12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청송건설용역에 의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철거용역 중 한 명은 발가벗고 부녀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 지난 1월 8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는 분당구청 단속반에 의한 폭력적인 노점상 단

속이 진행됐다. 단속반은 아이를 업고 있던 임산부까지도 집단폭행했다.

·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 방침을 밝혔다. 가난하고 못 먹어서 걸린다는 결핵 치료비도 구하기 힘든 결핵환자들이 민영화에 따른 치료비 인상으로 치료마저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위의 사례들은 주위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들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존 사법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가인권기구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혹은 합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법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인권침해임에 분명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꾀하는 데 인권위의 설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

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등 8가지 형사범죄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 행위들은 응당 수사기관이 수사해 처벌해야 될 범죄행위이며,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 물론 기존 수사 기관들이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인권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인권위를 보조적인 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렇게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범죄행위로 한정시킬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인권 위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수사의무를 방기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15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 영역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 경우 차별금지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행정기록(전과)이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혹은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준법서약 강요 등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문제는 전혀 인권위의 조사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적 규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으로, 법무부가 인권위의 본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이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문제,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범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무장해제시켜 놓고 조사할 수 있다?

좁은 범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라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각종 제한규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인권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우선 조사대상 기관이 인권위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지 않거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조사를 관철시킬 방안이 전혀 없다. 둘째, 설사 조사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발뺌하면 그만인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기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혹은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 등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거부 사유를 들어 인권위의 조사를 마음대로 거부해도 인권위는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다. 넷째,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인권위는 조사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봉쇄할 수 있으며, 그 사이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은폐·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곳곳에 인권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뢰를 매설해 놓고서도, 곳곳에 인권위를 무장

곳곳에 인권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뢰를 매설해 놓고서도,
곳곳에 인권위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서도, 법무부는 인권위에 충분한 조사권이
보장되어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해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서도, 법무부는 인권위에 충분한 조사권이 보장되어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조사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의 조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기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쪽 팔리면 고친다?

인권위가 위와 같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조사를 마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구제하고 앞으로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구제조치를 내리지도 못한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인데, 만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물론 피진정인이나 그의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위가 구제조치나 개선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지만, 합의와 조정에도 따르지 않던 사람이 어떠한 강제력도 없는 시정권고를 내린다고 해서 따를 리 만무하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대

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인권침해의 중지나 보상 등을 명령하거나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제도개선 등을 권고함으로써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인권위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권위의 높은 도덕적 권위와 여론의 압력을 동원하면 시정권 고로도 충분히 구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쪽을 주면 알아서 고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권위의 도덕성이 일정한 강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여론의 포화를 피해야하기 위해 잠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마련하고서는 금새 옛 관행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가 빛발치고 법원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명령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법적 관행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보라. 또한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들이 이미 도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가 고위층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도덕성의 힘이 권력의 힘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도덕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이라는 태생적 한계!

위와 같은 한계들은 인권위가 법인으로 설치되는 한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법인의 위상을 가지므로 그 설립과정과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작업을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권위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관할하에 놓이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한낱 법인에 불과한 인권위에 충분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위상과 권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가기능의 본질과 인권위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법무부 홍보자료,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공추위'의 성명, 과연 옳은가?」, 1999년 4월 8일자)이라는 폭압적 언사를 동원하면서까지 법인의 위상을 고집하고 있다. 인권위는 단지 기존 국가기관의 틈새를 감시·보충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감시'가 절실히 필요로 법인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라는 것은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권위가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업무를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옳다. 모든 국가기관의 본질적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찰과 교정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이니 만큼 누구보다도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정화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코 우리 민간단체들은 국가기관이 인권보장 업무에 간여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시·보충하기 위한 민간기구여야 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보장 의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다른 국가기관이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그 자체로써 또 다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해되어야 옳다. 인권위는 국내내에서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반성장치' 이자 기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제 사회와 시민사회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인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간감시'는 이미 민간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이며, 민간감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 정부가 주도해 만든 민간기구는 관변단체와 다름없는 것이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기 힘들다.

기로에 선 김대중식 인권정책

현 인권법안대로라면 인권위가 소외되고 억눌린 국민들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알리바이 인권기구', 혹은 정권 홍보용 인권상품의 하나로 진열대에 설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면서 그 변형에 불과한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와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칼날로 노동자·빈민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김대중식 인권의 길'에 대한 비판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인권법의 향방은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마지막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 인권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김대중 정권의 기만적 인권정책은 '인권의 이름'으로 완전한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올바른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위가 정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허구적 인권기구가 아니라,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 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할 수 있는 인권기구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현 인권법안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염원하는 인권운동과 국민들의 비판과 결집된 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권법안(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함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국가는 이 기본방침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3.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4. 기타 인권의 응호와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국민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시·보완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교정기관 등'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한다.

3.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라 함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교정기관 등·보호관찰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군검찰·현병·기무부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4. '다수인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경찰서 유치장·교정기관 등·외국인보호소·군교도소(군구치소 및 현병대의 영장을 포함한다) 및 다수인보호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기관의 인권보장 의무와 역할

제5조(국가기관의 의무) 모든 국가기관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 및 정

책의 수립에 있어서 인권의 응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야는 아니된다.

제6조(법무부의 역할)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옹호에 관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

3.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

4. 인권의 응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②법무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고발 및 수사의뢰와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역할)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활동에의 참가, 제외국민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통하여 인권의 응호와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인권신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고용의 촉진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분야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여성인권의 응호와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차별행위의 금지

제8조(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출산 또는 임신을 포함한다),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가족의 상황, 정치적 견해에 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9조(인증모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

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 또는 증오심을 표명하거나 경멸 또는 조롱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기한 차별행위로 본다.

제10조(성희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성희롱은 성별에 기한 차별행위로 본다.

제4장 국민인권위원회

제1절 설립 및 업무

제11조(설립) ① 차별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고 기타 인권의 응호와 신장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2조(독립성)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소) ①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사무처에 관한 사항

8. 인권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적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의 지원

6.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7.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8.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10.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11. 인권의 응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17조(구금·보호시설의 시찰) ①위원회는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원회으로 하여금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찰하는 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찰하는 인권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보호시설을 시찰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시설의 장에게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권고 등의 상대방 및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 ①제16조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은 관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연례보고서 등) 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조직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이를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위원 중 3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각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

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7조 제3항, 제28조 제2항 단서, 제29조 제4항, 제40조 제3호 단서, 제4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결
3.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은 그의 이익과 위원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7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2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진정인·피진정인 및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진정의 피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 이자 또는 공동의부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민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위원과 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

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국가의 지원 등

제3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출연금의 교부) ①국가는 위원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산의 기부) ①법인·단체 및 개인은 위원회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받은 재산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와 구제의 절차

제4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사기관 등의 직원 또는 다수인 보호시설의 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범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나. 범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 또는 수색하는 행위

다. 범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

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사진을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마.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징계 또는 정벌하는 행위
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고문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수사기관 등의 직원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3.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닌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4.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
제41조(진정인의 적격)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42조(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진정인의 성명 기타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43조(구금·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권 보장) ①구금·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어 있는 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그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서의 작성을 허용한 직원은 그 진정서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접수증명서를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진정의 각하) ①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5.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8.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재판·행정심판·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현법재판소의 심판이나 현법소원·감사원의 감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 조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한 경우 그 진정인은 그 각하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에 다시 진정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진정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6조(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께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이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받는 기관·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 당해 위원이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①위원회가 제47조 제1항 제4호, 동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진행중인 범죄수사 또는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조치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진정의 이송) ①위원회는 진정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송받은 진정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의 중지) 위원회는 진정의 당사자나 참고인의 소체불명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1조(긴급구제조치의 권리)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당해 직무로부터의 배제
3. 기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구제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받은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그 권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합의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嫌疑가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3조(조정절차의 개시) ①위원회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피해자와 피진정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조정) ①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기명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진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진정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하 '조정에 갈을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조정에 갈을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동일 또는 유사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④ 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및 피진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조정의 효력)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나 피진정인이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구제수단에 관하여 조언 할 수 있다.

제56조(법률구조) ① 위원회는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구제조치 등의 권리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54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8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리,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표명,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조사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63조(권고 등의 공표)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그 고발 또는 수사의뢰의 대상인 혐의사실을 제외하고 당사자·죄명·수사기관명·고발 또는 수사의뢰 일자만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등을 공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4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① 위원회로부터 제16조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권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6조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그 조치결과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5조(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위원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제16조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의 표명,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의 표명,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견의 표명,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조사의 경우 준용규정) 제46조 내지 제57조,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조사·처리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8조(인권옹호업무방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69조(허위진정)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진정서 작성 등 방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자

제71조(인권위원 등 자격사칭)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비밀누설)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3조(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3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정치관여금지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무를 인계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설립 당시 임명하는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과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2년인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장에 그 임기를 명시하여야 한다.